

1997. 12. 16

담關聯對策 特別委員會

活動結果報告

忠清北道議會

목 차

I. 총 평 121

II. 주요 활동일정 123

III. 국회입법청원 추진결과 128

IV. 댐주변지역 민원·건의 추진결과 134

V. 첨부자료 136

1.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위원명단
2. 특정다목적댐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안 (입법청원안)
3.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안 (정부추천 법률안)
4. 특정다목적댐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안 (국회의원 32인 발의안)
5. 댐주변지역 민원·건의 추진목록

I. 총 평

- 국가기간시설로 건설된 충주댐, 대청댐 등은 수도권을 비롯한 관련지역의 생활용수, 전력공급 등 국가산업이나 경제발전에는 크게 기여하였지만
- 댐주변지역의 자연환경 변화와 각종 규제에 따라 주민들은 생활의 큰 불편은 물론 물질적인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받아 왔기에
- 1996년 7월 24일, 12명의 위원으로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1년반동안 활발히 의정활동을 추진해 왔음
- 그동안 주민불편사항 및 건의사항등을 폭넓게 수렴하여 심도 있게 분석·확인·검토하고 댐주변지역 주민들에게 합리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법률안을 작성하여 국회에 입법청원을 제출, 적극 추진하는 한편
- 충청북도 경계인근에 위치해 있는 용담댐 건설과 관련한 사후 조치 및 영월댐 건설에 따른 사전조치 등을 의정활동을 통해 강구하여 온 결과,
- 특정다목적댐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입법청원하여 1996.12.12일 국회 건교위 청원심사소위 심사결과 청원의 취지를 반영한 정부측의 법률안이 제출되면 연계하여 처리하기로 하고 계류된 상태에서

- 정부에서는 우리도의회 청원입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포괄적으로 반영한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안을 성안하여 1997. 11.5일 국회에 제출하였고, 우리도회의 입법청원안을 그대로 수용한 국회의원 32인이 발의한 법률안도 같이 상정되어
- 1997.11.12 국회 건교위 법안심사소위 심사결과 댐건설절차의 대폭 간소화로 인한 환경문제 등에 대해서 보다 심도있는 조사를 위하여 심사보류 결정되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처리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충주댐, 대청댐 등 댐주변지역을 현지확인 민원 및 건의사항을 수렴·파악하여 집행부에 처리토록 촉구해온 결과 총26건중 12건은 완료하고 14건은 계속 추진중에 있음
- 지난 1년반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의욕적인 특위활동과 집행부의 아낌없는 협조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앞으로 댐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은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되며,
- 특히, 국회입법청원안 완결을 위하여 국회에서의 법안심사과정과 청원심사과정에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Ⅱ. 주요 활동일정

◆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설치 ('96.7.24, 제127회임사회)

- 12명 : 박학래, 최선환, 최종철, 이선호, 이길하, 오성진, 유재철, 송재주, 장준호, 박은섭, 박계국, 박상수

※ 박상수의원 추가선임 : '96.10.29

- 활동기간 1년 : '96.7.24 ~ '97.6.30

※ 활동기간 6개월 연장 ('97.6.21, 제138회임사회)

- 당초 '97.6.30까지 → 변경 '97.12.31까지

◆ 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96. 8.6)

-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세부추진계획 수립, 특별법 내용 협의
- 향후 건설될 용담댐, 영월댐과 관련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 논의 (현지확인 및 관계부처 방문 등)

◆ 특별법소위원회 회의 ('96. 8.16)

- 특정다목적댐주변지역에관한법률안 검토
- 특별법안에 대한 자문법률전문가 선정, 소개 국회의원 선정 등

◆ 청원입법관련 자문법률전문가 면담 ('96. 8.20)

- 자문법률전문가 2명 :
- 특정다목적댐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안 검토

◆ 국회 방문 ('96. 8.23)

- 특정다목적댐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안 취지설명
- 청원입법을 위한 소개 국회의원 협의
(청원소개의원 : 김영준 의원)

◆ 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96. 8.26)

- 특정다목적댐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안 청원서 채택 (원안가결)

◆ 법률안 청원의견 채택 ('96. 8.28)

- 특정다목적댐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안 제정청원서 (원안가결)

◆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 태방 ('96. 9.18)

- 댐관리처 댐운영부장 장기환 외 1명
-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댐과 관련해서 업무협조를 다 하겠음

◆ 특별위원회 간담회 ('96. 9.20)

- 특별법 청원접수후 위원들의 능동적인 의정활동 전개
- 전국 운영위원장 및 의장단협의회를 통하여 특별법에 대한 취지 및
여론 환기

◆ 청원서 국회제출 ('96. 9.23)

-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96. 10.7)

◆ **충주댐주변지역 현지확인** ('96. 10.1~10.2)

- 댐주변지역 현황 및 문제점, 주민요구사항 등 청취
 - 충주댐 주변지역 (충주 목행동 산64-2 승조희, 단양군 별곡리),
 - 충주시청, 단양군청

◆ **특별위원회 소위원회** ('96. 10.7)

- 댐주변지역 현지확인 결과 협의
- 대청댐, 용담댐 등 댐주변지역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문제점 및 건의사항 등을 도출, 건의 및 처리촉구하는 방향으로 의정활동 추진

◆ **특별위원회 소위원회** ('96.11.2)

- 청원제출후 국회 처리상황 설명 및 향후 의정활동 방향 논의 (국회의원, 정당관계부서 등에 자료 송부 및 방문활동 구체화)

◆ **입법청원안 유인배부** (500부)

- 국회의원 299, 시도의회회장 및 운영위원장 32, 정당 정책위 8, 신한국당 대책위원 18, 환경포럼 50, 기타 언론홍보 및 국회방문 등 93

◆ **국회 및 정당 방문** ('96. 11.12~11.15)

- 국회, 국회의원, 정당관계자, 중앙부처 등 12개기관
- 특별법 제정을 위한 그동안의 활동상황 및 향후 의정방향 논의 청원입법안 취지설명 및 입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 등

◆ 청원인 진술 및 국회방문 ('96. 12.11~12.12)

- 청원입법안에 대한 업무협의 및 국회청원심사규칙 제10조에 의거 청원인 진술
- 정부측에서 성안중인 법률안이 나오면 본건청원과 연계하여 처리하기로 하고, 정부측 법률안이 나올때까지 계류
- 세부내용 : 별첨

◆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중간보고 ('96. 12.23)

- '96.7.24 댐특위 구성후부터 '96.12.20까지 활동결과 중간보고

◆ 한국수자원공사 방문 ('97. 2.22)

- 충주호낙시터 허가연장 진정 협의
- ※ 민원인 래방 상담 ('97.1.30)

◆ 특별위원회 제3차회의 ('97. 6.18)

- 댐특위 활동기간 연장의 건 위원회 제안
- ※ 활동기간 연장의 건 협의 간담회 ('97. 5.29)

◆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97. 6.21, 제138회임사회)

- 활동기간 6개월 연장 : 당초 '97.6.30 → 변경 '97.12.31

◆ 도정질문시 댐주변지역 지원촉구

- 내용 :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 제136회 임시회 ('97.4.15) 최종철 의원
- 제141회 임시회 ('97.9.29) 유재철 의원
- 제143회 정기회 ('97.12.3) 최종철 의원

◆ 대청댐 주변지역 현지확인 ('97. 10.10)

- 대청댐 주변지역, 옥천군청
- 대청댐 주변지역 문제점 및 민원·건의사항 수렴

◆ 정부측법률안 심사협의 국회방문 ('97. 11.9~11.13)

- 정부측 법률안 심사과정 방청 및 입법청원안 내용 반영 협의
- 청원의 취지와 내용이 정부측 법률안에 포괄적으로 반영되었으며, 국회 건교위 법안심사소위 심사과정에서 환경관련단체의 강력한 반발로 보다 심도있는 조사를 위하여 심사보류 결정
- 세부내용 : 별첨

◇ 정부측 법률안 추진과정

- 정부측 법률안 성안약속 ('96.12.12) : 댐건설및지원에관한법률안
- 입법예고 ('97. 8.11) : 댐건설및지원에관한법률안
- 국회에 제출 ('97. 11.5) :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안
- 건교위 심사 ('97. 11.10 ~11.13)
- 건교위 법안심사소위 심사 ('97. 11.12) : 심사보류 결정

Ⅲ. 국회청원입법 추진결과

1. 청원입법안 국회심사내용

◆ 국회 건교위 청원심사소위 ('96. 12.12)

- 정부측에서 성안중인 법률안이 나오면 본건청원과 연계처리하기로 하고, 정부측 법률안이 나올 때까지 계류

1) 김영준 소개의원 취지설명

- 댐주변지역 주민은 재산적, 정신적, 신체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 수질을 맑게 보전하기 위해 인근 지자체에서 과중한 재정부담을 감수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에게 규제에 상응하는 보상과 지원이 절대 필요하며,
-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와 댐건설 촉진을 위해서도 동법률 제정이 반드시 필요함

2) 국회 건교위 수석전문위원 이승훈 의견제시

- 댐주변지역 주민과 지자체에 대하여 보상과 지원수준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 본건 청원의 취지는 반영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나, 법률안에 일부 추가할점이 있어 정부측(건교부)에서 충분히 검토를하여 입법조치 하여야 할 것임
- 다른 댐지역도 같은 피해를 보고 있으나 다목적댐지역만 언급
- 수혜지역을 지정하기는 어려워 댐사용권자의 출연금으로 부담하는 것이 적절함 등

3) 건설교통부 건설지원실장 이현석 의견 제시

- 건교부 입장에서도 청원취지에 공감하고 있음
- 종합적인 내용을 포함한 댐건설및지원에관한법률안을 건교부에서 성안중에 있어, 마무리되는 대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 국회 건교위 법안심사소위 ('97. 11.12)

- 법률안이 댐건설 절차의 대폭 간소화로 인하여 환경파괴 문제가 예상되므로, 공청회개최등 심도있는 조사를 위하여 심사보류 결정
- ※ 환경관련단체의 강력한 반발과 대선 등과 관련하여 '97 정기국회 처리는 불투명하고, 내년 상반기에 재심사 예정

2. 청원입법안과 정부특별법률안의 비교

◆ 입법청원안 (특정다목적댐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안)

○ 청원서 국회제출 : '96. 9.23

○ 국회건교위 청원심사소위 : '96.12.12

- 청원 취지에 공감하고 있으며, 충청북도의회가 제출한 입법청원안을 참고하여 정부측에서 성안중인 법률안이 나오면,
- 본건 청원과 연계하여 처리하기로 하고, 정부측 법률안이 나올 때까지 보류

<주요내용>

- 다목적댐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 건교부장관이 지원사업기금을 설치·운영하고
- 재원은 ① 일반회계 출연금, ② 다목적댐 수탁관리자의 출연금, ③ 수혜지역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함
-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법률안에 명기함
 - ① 주변지역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환경기초시설 운영,
 - ② 주변지역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환경기초시설등 특수지원사업
 - ③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의 소득증대,공공시설,육영사업 등
 - ④ 환경변화 조사연구기관 설치운영 지원사업 등

◆ 정부측법률안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안)

○ 입법예고 : '97. 8.11, 국회 제출 : '97. 11.5

○ 국회건교위 상정,심사 : '97. 11.10~11.13

- 댐건설절차 대폭 간소화등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공청회 개최등 보다 심도있는 조사를 위하여 심사보류 결정

<주요내용>

- 댐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이러한 지원이 다목적댐 외에 생·공용수댐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댐건설 절차를 대폭 개선 (간소화) 하기 위하여,
- 기존의 특정다목적댐법을 폐지하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여 '98. 9.1일부터 시행
- 우리도의회 청원과 관련된 내용을 제3장(댐건설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제43조, 제44조에 반영하는등 5장 52조, 부칙 13조로 구성됨
- 우리도의회 청원과 관련된 내용 중
 -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세부내역은 법률안에 명기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하였고,
 - 대규모댐이 건설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댐건설기간동안 시장군수가 댐건설사업시행자와 시장군수가 부담하는 재원으로 댐주변지역 정비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 댐건설이 완료된 후에는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와 시장군수가 댐관리청 또는 댐사용권자의 출연금을 별도회계로 관리하는 재원으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함

◆ 입법청원안의 정부측법률안에 반영여부

1.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 우리 도의회 입법청원안은
 - 세부적인 지원사업 내역을 법률안에 명기한 반면,
- 정부측 법률안은
 - 세부적인 지원사업 내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법률안에는 명기하지 않음

2. 지원사업기금의 설치운용

- 우리 도의회 입법청원안은
 - ① 일반회계 출연금, ② 다목적댐 수탁관리자의 출연금,
③ 수혜지역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하여
사업기금을 설치하여 건교부장관이 관리하도록 하고있는 반면,
- 정부측 법률안은
 -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의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되,
- 일반회계 출연금이 아니라, 댐 용수의 판매수입금중 일정비율로 출연토록 하여,
- 기금은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가 별도의 회계로 구분하여 관리토록 하고 있음

3. 결론적으로

- 우리도의회가 청원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 지원사업기금의 설치운용 등 청원취지와 내용은 포괄적으로 반영되었음
- 다만, 기금의 재원중일반회계 출연금과 수혜지역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이 제외되었음.

※ 앞으로 재심사과정 및 청원심사 과정과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 제정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한 반영을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

※ 참고로

- 우리도의회가 '96. 9.23일 입법청원한 법률안을 토대로 하여
- 권오을 의원 외 32인이 '96. 12.10일 지원사업의 종류를 보다 세분화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도의회 청원안을 그대로 (똑같이) 반영하여 同名의 법률안을 발의하였음
- 동 법률안 역시, '97. 11.10~11.12일까지 국회 건교위에서 심사한 결과 심도있는 조사를 위하여 심사보류 결정되었음

IV. 댐주변지역 민원·건의 추진결과

◆ 댐주변지역 현지확인

- 충주댐주변지역 ('96. 10.1~10.2)
 - 충주시 목별동 승조회, 단양군 별곡리
 - 충주시청, 단양군청
- 대청댐주변지역 ('97. 10.10)
 - 대청댐 주변지역, 옥천군청

◆ 민원·건의 추진결과

- 총 26건 (완료 12, 추진중 14) : 세부내용 별첨
 - 자원이용세 신설 (완료)
 - 적성대교 가설공사비 국고지원 (추진중)
 - 옥순대교 가설공사비 국고지원 (추진중)
 - 댐건설로 인한 이설도로 포장사업비 국고지원 (추진중)
 - 충주호 국민관광지 개발대책 (추진중)
 - 대청광역상수도 취수탑 상류지역 이전 (완료)
 - 충주댐광역상수도 사업비 국고지원 (완료)
 - 용담댐 건설에 따른 현안문제 (추진중)

- 옥천종합관광휴양지 국토이용계획 변경 (완료)
-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수혜자 부담조치 (추진중)
- 댐지역내 쓰레기위생매립장 설치비 국고지원 (완료)
- 상수원보호구역내 지역개발제한규제 완화 (완료)
-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만료후 대책 (완료)
- 댐주변 쓰레기 수자원공사 수거처리 일원화 (완료)
- 댐내 선착장시설 건설비 지원 (추진중)
- 댐내 마을노후 자가도선 교체비 지원 (추진중)
- 승조회 운영비 전액 지원 (추진중)
- 유료낚시터, 가두리양식장 근본대책 수립 (완료)
- 지역개발세의 현실화 (완료)
- 댐주변지역 지원금 산정기준 상향조정 (완료)
- 충주조정지댐 하류지역 수해상습 농경지 대책 (추진중)
- 하점단 재해위험지구 지원 (추진중)
- 수위조정지댐 (수중보) 건의 (추진중)
- 산업기능 보강의 도시계획도로 건설 (추진중)
- 개발가능한 제내지를 지방자치단체에 환원 (완료)
- 상진~고수간 비상우회도로 건설 (추진중)

V. 첨부자료

1.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위원명단
2. 특정다목적댐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안 (입법청원안)
3.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안 (정부측 법률안)
4. 특정다목적댐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안 (국회의원32인 발의안)
5. 댐주변지역 민원·건의 추진목록